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995호

「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배기량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기준 현실화 및 다양한 차종의 택시운송사업에 활용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축간거리 기준(2.895미터 이상) 신설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교통서비스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(검토의견)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
- 전화 : 044-201-4755 / 팩스 : 044-201-5581
- 이메일 : csw7168@korea.kr